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102548 판결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2. 2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2,4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10. 21.부터, 피고 C는 2021. 10. 9.부터 각 2022.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인테리어'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D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 B은 주로 공사현장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부천시 E건물 2층에 'F 휘트니스'라는 휘트니스 클럽을 개설하기 위해 2020. 7. 21. 피고들과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은 50,000,000원이었고, 공사기간은 2020. 8. 1.부터 2020. 8. 15.까지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9. 1. 휘트니스 클럽을 시작할 계획이고 2020. 8. 마지막 주부터 임시로 열어 회원을 유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D인테리어 계좌로 2020. 7. 21. 20,000,000원, 2020. 8. 13.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0. 8. 22.경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 C는 공사를 잘 마무리할 테니 피고 B을 공사에서 빼달라고 하였다.

바. 피고 C는 2020. 8. 25. 원고에게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니 잔금을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D인테리어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C는 2020. 8. 28.부터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2020. 8. 31. 원고에게 피고 B이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20. 8. 28.부터 피고들과 일하던 G을 통해 남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자. 피고 B은 2020. 9. 1.경부터 거울공사, 바닥타일공사를 일부 수행하고 현장에 있는 폐기물, 공구, 자재를 정리하였고, 2020. 9. 3.경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 37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하여 인건비, 추가 공사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합계 9,722,490원을 지출하였고, 2020. 8. 16.부터 2020. 8. 30.까지 29,969,520원의 매출 손실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이 공사를 엉터리로 진행하다가 결국 중단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307,990원(= 40,000,000원 - 9,722,490원 - 29,969,520원)을 일부 청구한다.

나. 재산상 손해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 지연 중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두절이 되었으며,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9, 37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두절이 되는 바람에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직영으로 하느라 9,722,4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4,722,490원(= 원고가 지출한 총 공사비용 54,722,490원 -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8. 16.부터 2020. 8. 30.까지의 매출 손실 29,969,520원도 재산상 손해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원래 2020. 9. 1. 휘트니스 클럽을 개업할 계획이었던 점, ② 2020. 8. 말경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헬스장 등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던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2020. 8. 말경 임시 개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매출을 얻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공사 지연, 중단으로 원고에게 29,969,5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손해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2,4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서면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피고 C는 위 서면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8.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